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8
----------	-----

2023. 4. 21.(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태훈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3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태훈 의원)

### 가. 제안사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이를 근거로 그동안 동 조직운영 및 사업내용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과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가. 제출배경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직운영 및 사업내용을 지원해 왔음.
-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과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경남,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2조	정의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책무	제8조	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제4조	보조금 지원	제9조	포상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안 제2조(정의)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충청북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 및 읍·면·동위원회로 구체화함

○ 안 제3조(책무)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이념과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사업 시행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중복지원 금지)

- 다른 보조금 지원과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는 것임.

○ 안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사용하게 하며,
-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함.

다. 종합 검토의견

- 현재 충청북도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11,89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지방재정법」 제17조<sup>9)</sup>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제7조<sup>10)</sup>를 근거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충청북도협의회’ 등 국민운동 관련 단체·조직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이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다만, 동 조례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

9)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1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제4조(보조금의 지원)에서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정함으로써 도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원 또는 재정부담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됨.
- 동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 재정지원 가능 사업, 지원신청 및 사후 정산절차 등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고,
- 충청북도가 상위법령에 의거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들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시·군 협의회 및 읍·면·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 ①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약칭: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약칭: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군·구 협의회
3. 읍·면·동 위원회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1.6>**

**제5조(잉여금의 처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공유시설 무상사용의 내용·조건 및 기간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결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3.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안전행정부장관 외에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 및 건강사회 실현을 통해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비용발생 요인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사업비

##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 조례안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 조례안 제6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 4. 비용추계 결과

- 재정수반요인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
- 추 계 기 간 : 2023년부터 2027년부터 5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476,364천원(도비 343,690천원, 자부담 129,955천원)
  -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협의회 운영지원 등 2개 사업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 입							
세 출	473,645	90,315	92,440	94,640	96,930	99,320	
(기존) 2개 사업							
-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 협의회 운영지원	193,690	35,770	37,200	38,680	40,220	41,820	
-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재원 조달	473,645	90,315	92,440	94,640	96,930	99,320	
도비	소 계	343,690	65,770	67,200	68,680	70,220	71,820
	보조금	343,690	65,770	67,200	68,680	70,220	71,820
시군비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기 타 (자부담)	129,955	24,545	25,240	25,960	26,710	27,500	